

# 광주고등법원

## 제2행정부

[2019누12462]

사건명 : 일시보상급여 청구의 소

원고 : 원고1

목포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 종결 : 2020. 7. 15.

판결 선고 : 2020. 9. 2.

## 주문

- 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2,080,656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

고는 제1심에서 ○○○을 대위하여 일시보상급여 지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제1심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제1항에 기한 진료비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시 ○○로 ○○○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급여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어선원인 ○○○은 2015. 10. 14. 19:30경 어선인 ○○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를 타고 전남 ○○군 ○○면 ○○해상에서 어업 작업을 하던 중 로프에 머리를 맞아 의식저하 상태로 이 사건 병원에 옮겨져 입원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다.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 ○○○가 가입한 어선원보험에 기하여 피고의 ○○지역본부장은 2015. 10. 22. 이 사건 병원 앞으로 ○○○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결정통지서를 보냈다. 그 요양결정통지서에는 '요양의 구분:최초', '상병명:뇌진탕등', '결정 내용:입원 84일(2015. 10. 14.부터 2016. 1. 5.까지)' 등의 요양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그 이후 2017. 10. 28.까지 ○○○에 대해 실시한 요양에 드는 비용(진료비)을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지역본부장은 2017. 10. 25. 이 사건 병원에 ○○○의 요양기간을 2017. 10.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라 한다)를 보냈는데,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에는 '기타 결정사항:일시

보상급여 대상자로 요양 결정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의 ○○지역본부장은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일시보상급여안내**

2. ○○군 수협 소속 ○○○ 소유 ○○호 피재어선원 ○○○은 사고일(2015. 10. 14.)이후 현재 까지 2년이 지난 상태로 요양 중인 자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조(일시보상급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본회는 피재어선원 ○○○을 일시보상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여 2017. 10. 28.까지 요양 종결하고자 하며 피재어선원에게 일시보상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동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향후 요양급여의 지급책임이 없어짐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에 대한 보존적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데, 2017. 10. 29.부터 2019. 6. 26.까지의 요양에 든 비용(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은 합계 173,962,740원이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9. 12.경 및 2020. 5.경 ○○○을 대위하거나 직접 피고에게 172,080,656원의 일시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역본부장은 2019. 12. 30. 및 2020. 5. 8. '일시보상급여청구권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어선원 및 유족)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는 일시보상급여청구권이 없고, 같은 법 제35조가 규정한 대위청구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 일시보상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또한 2020. 5. 4. 이 사건 병원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역본부장은 2020. 5. 8.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에 대하여는 2017. 10. 28.까지의 요양이 승인되고 이후 요양이 종결되어 요양급여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무자력인 ○○○에 대해 173,962,740원 상당의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는 2017. 10. 25. ○○○에 대해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조,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 ○○장관의 선원 ○○○○○○○(2015-10호, 제2015-205호, 제2016-205호)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 일시보상급여는 172,080,656원(=1일 승선평균임금 116,744원 × 1,474일)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은 피고에 대해 일시보상급여 172,080,656원에 대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있다.

3) 원고는 ○○○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172,080,6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에 대해 일시보상급여 지급청구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하였을 뿐,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에게 일시보상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그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일시보상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 역시 ○○○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일시보상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다.

## 2) 판단

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1조 제2항, 제2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른바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으로서,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인 인정받은 다음, 비로서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조에 의하면, 요양급여와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피재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피재어선원에게 일시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의 책임을 면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계속 지급할 것인지, 일시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요양급여 등의 책임을 면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지역본부장은 2017. 10. 25.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보냈고, 거기에는 '○○○을 일시보상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2017. 10. 28. 요양을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피

고는 2017. 10. 29. 이후 ○○○에 대한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의 요양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에 더 이상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시보상급여 지급 여부가 위와 같이 피고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어서, ○○○으로서는 피고에게 일시보상급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 있는 없는 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나)항 기재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피고가 2017. 10. 25. ○○○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범위를 확정해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에 대해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의 내용도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을 일시보상급여 대상자로 결정하여 그에 대한 요양을 2017. 10. 28. 종결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며, 수급권자인 ○○○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보낸 사실을 통해 우선 ○○○을 일시보상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의 일시보상급여는 172,080,656원으로 산정되므로 ○○○의 일시보상급여 지급청구권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해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2020.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에 따라 ○○○에 대한 일시보상급여를 지급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에 대한 일시보상급여 지급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일시보상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구를 할 수 없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는 ○○○에 대한 민사상 채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피고와의 사이에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거나,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을 대위한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10. 25. ○○○에 대해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일시보상급여는 요양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취지로서, 피고는 ○○○에 대해 2017. 10. 29.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요양급여 지급에 기해 2017. 10. 29. 이후 ○○○에 대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요양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의3에 기하여 이 사건 진료비 중 일시보상급여 172,080,656원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 나. 직권판단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 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당사자소송에도 제10조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흡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판결 참조)

2) 원고는 당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 중 일부를 직접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의3에 의하면,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피제어선원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에 드는 비용(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요양급여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사이에 그 의료 기관이 같은 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피고가 피제어선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했을 때 당해 의료기관이 피고에 대하여 그 요양에 관한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피제어선원에 대한 진료비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적 행위이고, 이러한 지정행위의 실체적 전제가 되는 요양담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진료비 상환청구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가 아닌 민사상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 2020. 3. 4.자 청구원인 추가신청은 기존 당사자소송(주위적 청구)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예비적 청구)을 병합하는 것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에 따라 일용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통해 ○○○의 요양에 대한 종결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우선 그와 같은 치료 종결 처분이 ○○○ 또는 그 가족에게 도달했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다(○○○은 의식 불명 상태로 그를 보호하는 가족도 없다). ② 당시 ○○○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자료 역시 찾을 수 없다. ③ 한편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조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언급한 일정한 요건 하에 피제어선

원에게 일시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책임을 면하는 것인데, 피고는 ○○○에 대한 일시보상급여 지급결정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을 일시보상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통해 그에게 그 지급청구를 안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에게 일시보상급여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의 ○○○에 대한 치료 종결 처분이 과연 적법·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시보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 ○○○에 대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요양결정통지서 및 안내문에 기재된 요양 종결 예정일 다음날인 2017. 10. 29. 이후에도 여전히 ○○○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에 볼 경우, 원고가 2017. 10. 29. 이후 ○○○에 대해 실시한 요양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병합된 관련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도 소송요건을 흡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는 없다

##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